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등〉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1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	3
2. 자녀의 보상금 수급연령 제한(25세 미만) 폐지	7
3. 6·25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에 최고 금액 수준 보상금 지급	13
3.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19
5. 보상금 및 6·25자녀수당 중복 지급	23

I. 제안경위

1. 제출자 : 박선원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4. 11. 22.
3. 회부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

하는 보상과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

□ 개정안은 동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유가족의 범위에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 까지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자녀</u> 3.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5조제1항¹⁾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로 구성되어 있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은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현행 법체계 및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법체계는 국가유공자와의 직접 관련성, 부양·양육관계 등을 감안하여 설정됨.

○ 현행법 제5조는 국가유공자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대로 부양·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대신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만 ‘광복 전 구(舊)호적에 기재된 며느리’를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한 바 있음.²⁾

2)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에 가족까지 감시와 핍박받은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광복 전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를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광복 전 며느리’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의 관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둘째, 국내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가족의 범위에 자녀를 포함하고 있을 뿐,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³⁾

○ 국외 보훈대상 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봐도,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⁴⁾

※ 독립유공자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에 기재) 지원 현황

구 분	내 용
보상금	월 933~2,895천원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양로지원	무의탁자 중 60세이상인 자로 보상금 수급자
대부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 등 대부
고궁 등 이용지원	무료이용 또는 감면
취업지원	채용시 가점 및 능력개발비 지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3) 국내 입법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 배우자 2. 자녀(25세미만, 장애2급이상) 3. 부모(60세이상, 장애2급이상) 4. 손자녀(19세미만, 장애2급이상) 5. 조부모(60세이상, 장애2급이상)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1. 배우자 2. 부모·조부모(60세이상) 3. 자녀·손자녀(25세미만) 4. 형제자매(19세미만 60세이상)

4) 보상 대상 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국외 입법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1. 배우자 2. 자녀(18세미만, 취학중인 24세미만) 3. 부모	1. 배우자 2. 자녀(25세미만)	1. 배우자 2. 자녀(18세미만, 성년장애)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성년 장애자녀 4. 부모 5. 조부모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의 직접 관련성,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의 직접 관련성, 부양·양육관계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보훈법령상 유가족의 범위인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자녀의 보상금 수급연령 제한(25세 미만) 폐지

□ 개정안은 동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연령 제한(25세 미만)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 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 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 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 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2조⁵⁾는 제1항제1호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

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②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④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등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의 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즉,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유족이 자녀인 경우 보상금 수급은 25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

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6)>

① 배우자 → ② 25세 미만 자녀 → ③ 부모 →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참고로, 현행법은 보훈급여금을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있음.⁷⁾ 한편, 만 25세 이상인 6·25전몰군경 자녀의 경우 과거 50~60년대 보훈제도 미비로 인해 유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생활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그에 대한 보전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⁸⁾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나이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자녀의 연령을 제한한 취지 및 재정소요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법체계가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2년 동 법 개정 전까지 자녀는 ‘미성년인 만 1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를 국가가 대신하는 차원이었음. 성년이 되는 19세의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또한 대학 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중단으로 생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비해 취업난 등의 요인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동 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음.

○ 법 개정을 통한 수급 요건 완화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점과

자녀 연령의 점진적 상향이 아닌 자녀 연령 제한의 전면 폐지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급 요건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내용에 비하여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둘째, ‘6·25전몰·순직 군경자녀’의 경우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6·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자녀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경우 2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는 보상금과 수당을 동시에 수령하게 됨.

□ 셋째, 국가보훈부의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과 같이 자녀 연령을 폐지할 경우 재정규모는 연평균 8,59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⁹⁾

○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율은 80년대 초 약 1.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¹⁰⁾ 국가재원과 보훈예산의 재원이 한정적임을 고려할 때 보훈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9) 대상인원 : 74,975명(25세이상 선순위 자녀, 단 6·25순직전몰군경자녀는 제외), 상이등급별로 보상금액을 적용하여 산정

10) 우리나라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점유비율

(단위 : 억원)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5년 예산
정부예산(A)	58,040	226,894	864,740	2,012,835	5,122,504	6,733,016
보훈예산(B)	625	3,742	12,464	34,325	56,811	64,467
B/A	1.08%	1.65%	1.44%	1.71%	1.11%	0.96%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녀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를 25세 이상으로 보아 자녀의 보상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6·25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에 최고 금액 수준 보상금 지급

- ☐ 개정안은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① (생략) <u><신설></u>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으로 지급한다.</u>

- ☐ 현행법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상금 지급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¹¹⁾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 ③ (생략)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2025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184만 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이군경 5급 국가유공자 본인이 받는 182만 8,000원과 유사한 수준임.

□ 한편, 현행법은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금과 함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시행령 별표 5의5와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¹²⁾¹³⁾

12)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에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실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로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때 자녀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녀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시행령 제27조의3제7항 관련) 〉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613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u>1997년 12월 31일 이전에</u>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372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u>1998년 1월 1일 이후에</u>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16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비고

1.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2.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 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추가지원금은 지급대상인 경우에만 개별 지급한다.
 - 다.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 당시 부친의 전사 등으로 인해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전쟁고아라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해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성년이 됨으로써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6·25전몰군경 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 개정안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최고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려는 입법취지는 일응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현행 보상보훈체계, 타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소요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보상 원칙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개정안과 같이 전몰·순직군경의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어떠한 고려 없이 최고 금액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됨.

□ 둘째, 개정안과 같이 다른 보상금에 대한 연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연계되는 해당 보상금의 증감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6·25전몰군경 자녀’ 외의 다른 보상금 지급대상 유가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만 다르게 보상하여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부의 추계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 수준을 상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조 4,26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¹⁵⁾ 국가재원과 보훈예산의 재원이 한정적임을 고려할 때 보훈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에는 6·25 전몰·순직군경 이외

15) 11페이지 참고

에도 다양한 대상자가 존재하고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 보훈보상 요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 특성 및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 및 고려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예우·지원하는 보훈보상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 개정안은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① (생략) <u><신설></u>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u>⑦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개정안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최근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됨.¹⁶⁾¹⁷⁾

- 다만, 개정된 「국가배상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이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¹⁸⁾ 개정안의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여전히

16)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정부 제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167)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 바 있음.

18) 부 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단서가 적용대상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됨.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현행 보훈보상체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 보훈관계법률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6·25 전몰·순직 군경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를 포함한 전체 보훈체계의 틀 안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제도를 어떻게 설계·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중 6·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¹⁹⁾을 지급받는 자녀들에 대하여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은 동일함에도 6·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토가 필요함.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는 현 보훈보상 체계 및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유족에 대한 예외적인 정신적 피해 보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보상금 및 6·25자녀수당 중복 지급

□ 개정안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u>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 ----- ----- ----- ----- ----- -----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

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되, 유족 중 한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²⁰⁾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시행령 별표 5의5와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²¹⁾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생 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실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로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때 자녀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녀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한다.

⑦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 〉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694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u>1997년 12월 31일 이전에</u>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441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u>1998년 1월 1일 이후에</u>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85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비고

-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추가지원금은 지급대상인 경우에만 개별 지급한다.
 -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여 자녀에게도 지급하고 있음.

- 6·25전몰군경 자녀의 경우 현재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수당을 받고 있음.

- 자녀수당 신설 시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자녀수당의 대상자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개정안은 6·25전몰·순직군경의 유족중 1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의 특수성 및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6·25전몰군경 자녀 가계는 보상금(모친 또는 자녀 중 전순위자 1명)과 6·25자녀수당을 동시에 수급하게 되는바, 6·25전몰군경 자녀의 경우 현재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수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 또한 보상금을 수급하지 않는 유족에 한해 지급되고 있는바, 다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셋째, 국가보훈부의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10억원임.²²⁾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6·25전몰군경 자녀 처우 개선의 필요성 및 다른 유공자 자녀 수당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6·25전몰군경 자녀의 경우 현재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수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22) 대상인원 : 1,565명(6·25전몰순직군경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자녀가 있는 경우) 인원)

참고1

예산소요 추계

□ 자녀의 연령제한 폐지 시 소요예산 : 연 8,594억원 소요

○ 선순위자가 25세이상 자녀

(단가: 천원)

대 상		2025		
		인원	단가	월지급액
구분	전몰 및 순직 군경	5,246*	2,361	12,385,806
	상이1~5급,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20,138	2,050	41,282,900
	상이 6급	18,392	935	17,196,520
	재일학도의용군	160	2,050	328,000
	4.19혁명부상 1~5급	47	2,050	96,350
	4.19혁명부상 6급	38	935	35,530
	지원순직	11	2,050	22,550
	지원공상 6급	2	935	1,870
	6.18자유 1-5급	95	2,050	194,750
	6.18자유 6급	81	935	75,735
	계	46,235		71,620,011
소요예산	월 지급액 합계×12개월	8,594억원		

* 전몰 및 순직군경 자녀 전체 인원(36,011명)에서 6·25전몰군경 자녀인원(30,765명) 차감(6.25 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자녀 보상금 최고금액 수준지급 예산과의 중복 방지)

□ 6·25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자녀 보상금 최고금액 수준 지급시
소요예산 : 연 1조 4,269억원

인원	'25년 단가	월 지급액	연간 소요예산
30,765명 (6·25자녀수당 수급 자격 수)	3,865천원 (상이1급1항)	118,906,725천원	1조 4,269억원

□ 6·25전몰군경 자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시 소요예산
: 3,077억원

인원	단가	단가 기준
30,760명 (6·25자녀수당 수급 자력수)	10,000천원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한 폐지 시 소요예산 : 연 110억원

인원	'25년 신규승계자녀 단가	월 지급액	연간 소요예산
1,565명*	585천원	915,525천원	10,986,300천원

* 전몰순직군경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자녀가 있는 경우) 인원